

구매대행업자 등록 대상 사전안내문

○○○ 귀중

「관세법」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귀사가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임을 안내하오니,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귀사의 직전년도 구매대행 수입통관 내역 >

☐ 직전년도(20○○년)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* :

* 물품가격 :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(구매수수료 포함. 다만, 물품 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)

☐ 등록기한 : 20○○. 03. 31. 까지

☐ 미등록 시 :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「관세법」 제276조제3항)

< 등록신청 방법 >

☐ 제출 서류

① 신청서 :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호 서식

② 첨부서류 :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, 국세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

- (법인인 경우)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본증명서,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※ 구매대행업자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은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서식은 「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> 법령정보>행정규칙>고시」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☐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 관련 문의

○○○○세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 (전화번호 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)

년 월 일

세 관 장